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0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2
2. 부칙 관련 적용례 신설 필요	8
※ 참고자료	9
1.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	9
2. 「민사소송법」의 감정에 관한 규정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9.
3. 회부연월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개정안은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정(鑑定)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을 의미함. 「민사소송법」상 감정의 방식은 크게 감정인 지정과 감정의 촉탁으로 나뉨.

먼저, 감정인 지정은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접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및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하고(제335조의2 제1항),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35조의2제2항), 당사자는 감정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등 기피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또한, 감정인은 증인신문규정이 준용(제333조)되어 감정인 선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됨.

이에 비해, 감정의 촉탁은 「민사소송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함에 따라 이루어짐¹⁾.

1)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감정의 촉탁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입장에서는 감정인 선서에 따른 잠재적인 처벌의 위험성 없이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와 같이 감정의 촉탁의 경우에는 감정인 지정에 비해 선서 의무 등이 면제됨에 따라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그 공정성·진실성·전문성이 담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²⁾. 실무적으로 감정의 촉탁은 신체감정, 측량감정, 형사사건의 문서등의 감정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인 대학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³⁾.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전문기관의 기술 거래, 신탁 등과 이에 따른 기술가치 평가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술자료의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 시에도, 법원이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하여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요지 中

-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공무소나 학교 등 전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조에 의한 감정이라면 위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과 진실성 및 그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3) 구체적으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88호) 제14조 제1항은 신체감정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매년 3월 31일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 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감정촉탁기관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예규 제17조제2항은 측량감정의 방법 중 하나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감정을 촉탁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0조는 문서등의 감정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로 산정하고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4)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5)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감정을 촉탁함으로써,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의 촉탁의 경우, 감정인 선서 등이 면제되는 만큼 개별 촉탁기관의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엄격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은 전담인력 및 관리 조직 등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28조제2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기술평가기관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34개 중 14개 기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33개 중 25개 기관이 시중 은행, 일반 기업, 특허법인 등 민간 기관에 해당하고 있는데(참고자료 1), 공정성·전문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신뢰성이 담보된 소수의 공공기관이 아닌 다수의 민간 기관들까지 감정촉탁기관의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개별 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⁶⁾.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발명진흥법」상 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주요 취지는 기술 또는 발명자료의 이전·거래·사업화 촉진 등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있는데, 이러한 평가기관의 운영 취지가 개별 사안에서 기술자료의 유용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감정 업무에 호환될 수 있도록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함으로써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등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6) 실제로, 기술평가기관 중 (주)AA는 대한변리사회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 업무’를 이유로 해당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18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음.

- 출처: 매일경제, 「특허정보업체 무자격 감정 서비스 “위법”...1심 무죄 뒤엎고 항소심 유죄판결」, 2024.10.22..

또 다른 기술평가기관인 (주)BB정보, (주)CC데이터, (주)DD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예상 기술신용등급을 평가서가 최종 발급되기 전에 은행에 결과를 미리 제공하거나, 기술평가 영업을 목적으로 은행과 특정 등급에 관해 협의하는 등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평가대상 회사가 기술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기술금융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평가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출처: 뉴시스, 「“평가 결과 미리 약속하고 등급 조율하고”... 은행과 담합한 기술신용평가사들」, 2025.2.22.

2. 부칙 관련 적용례 신설 필요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음.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개정안의 개정규정이 시행일 기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시간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illegibl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주요내용
제333조 (중인신문 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4조 (감정의무)	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 (수소법원) 특정사건의 판결절차가 진행되는 법원 (수명법관) 재판장에 의해 지정(위임)되어 합의부를 대표하여 여러 소송행위를 행하는 합의부 일원인 법관 (수탁판사) 소송 계속중에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일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판사
제335조의2 (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 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제337조 (기피의 절차)	① 기피신청은 수소법인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8조 (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 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 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0조 (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제341조 (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제342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